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12. 7 선고 2021가단3856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12. 7.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2. 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20. 2. 12. 접수 제1012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사 서희경

별지